

2021. 9. 6.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9월 9일 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9. 9.(목)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변론시간
1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김○○ 외 2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5)	인사혁신처장 (정부법무공단)	14:00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 도 자 료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9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20. 5. 29. 접수된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라고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에 관한 부분이 공무원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1. 9. 6.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20헌가8사건의 위헌제청신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망인은 2015. 11. 5.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2016. 4. 5.부터 2년간 질병휴직을 하게 되었고, 질병휴직 중인 2016. 12. 31.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 2018. 3. 5. 배우자인 위헌제청신청인 김○○은 망인의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총장은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2016. 12. 3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제청신청인들은 2019. 7. 22. 서울행정법원에 2019구합73291호로 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망인이 당연퇴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질병휴직한 기간인 2016. 4. 5.부터 2018. 4. 4.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망인이 당연퇴직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당액의 반환을, ③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는 망인이 당연퇴직하였음을 전제로 반환한 보험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인 2019. 8.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20. 2. 11. 위 신청조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아12227).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

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조항]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위 조항에 의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된 공무원은 즉시 공직에서 배제되는 반면,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공직이 박탈되는 심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위 조항은 아무런 사전 고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다.

이해관계인 인사혁신처의 의견요지

-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당연퇴직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성과 공정성 역시 절차상으로 충분히 담보되고,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도 신분보장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무원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고, 성년후견의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당연퇴직시키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과 이외의 다른 일반 공무원들 간에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지정은 법률에서 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기에 사법적 감독 아래 절차가 진행되고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도 준수하였다.

주요 쟁점

- 성년후견개시요건에서 명시된 ‘사무처리능력’과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각각의 내용 및 양자를 별개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청구인 : [2020헌가8] 김○○ 외 2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김태형, 이지혜, 김이안, 변호사 이주언, 이선민, 마한얼,

정다혜, 배광열)

- 이해관계인 : 인사혁신처(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김완기, 안현주)
- 참고인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위헌제청신청인측)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진수(이해관계인측)

참고인 의견요지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위헌제청신청인측)의 의견요지
 1.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담보하고 민사상 법률행위에 있어 조력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이다.
 2. 피성년후견인 개개인의 능력은 다양하고, 국가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역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성년후견 개시와 동시에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동일한 사무처리능력을 가진 자라도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휴직이나 직권면직 등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자를 공직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덜 침익적인 수단이 존재하며, 위 조항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진수(이해관계인측)의 의견요지
 1.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행위능력을 있음을 전제로 행위능력을 공무원 임용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2. 공무원 퇴직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커지게 되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퇴직 절차를 밟게 할 수도 있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더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